

ILO 기준재검토 메커니즘(SRM) 4차 회의 참석결과

1. 목 적

- ILO 기준재검토 메커니즘 3자(노·사·정) 실무그룹(Standard Review Mechanism Tripartite Working Group) 제4차 회의에 참석토록 외교부에서 주제네바대표, 고용노동부 및 우리공단으로 대표단을 임명 통보함에 따라,
 - 근로감독, 노동통계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제협약 폐기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SRM TWG 제4차 회의에 참석하고자 함.
- ※ 우리나라는 2016~2017년 3차례 개최된 ILO SRM 실무 그룹회의에 정부그룹 16개국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음.

2.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7. 9. 15.(토) ~ 9. 23.(일) [7박 9일]
- 출 장 지 :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
- 출장목적 : ILO 기준재검토 메커니즘(SRM) 제4차 회의참석
- 출 장 자 :

소 속	직급	성 명	비 고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전문직 3급	김 경 환	

3. 주요 회의안건

- 다음의 안전보건 국제협약(Convention) 및 권고 기준(Recommendation)에 대한 재검토 및 폐기여부 등 결정 (회의자료 ILO 홈페이지 게재)

- 산업안전보건(광업) : ILO 협약 제45호, 제176호 및 권고 제183호
(건설업) : ILO 협약 제62호, 제167호 및 권고 제175호
- 근로감독(Labor Inspection) : ILO 협약 제85호 및 권고 제20호
- 노동통계(Labor Statistics) : ILO 협약 제63호, 제160호 및 권고 제170호

○ SRM TWG의 협약 및 권고 검토절차('17년 제3차 회의에서 제안) 논의

- (Options Paper 1) ILO 기준들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고려한 노동기준 개정방안
 - (ILO 협약) 주제별 통합, 부분적 통합, 전체적 통합(안)
- (Options Paper 2) ILO 사무국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한 SRM TWG 권고안의 효율적 운영방안

○ 2019년 회의안건 및 운영방향 등 논의

4. 세부 추진일정

일 시	현 지 시 간	수 행 내 용
1일차	2018. 9. 15.(토) 12:30 → 21:30	○ 인천 출발 → 제네바 도착 (취리히공항에서 기차로 이동)
2일차	2018. 9. 16.(일) [제네바]	○ 회의참석자 사전 면담 및 회의자료 검토
3~7 일차	2018. 9. 17.(월) ~ 21.(금) [제네바]	○ ILO 기준재검토 매커니즘 3자 실무그룹(SRM TWG) 제4차 회의 참석 - 장소 : ILO 제네바 본부 회의실 • 정부그룹회의(Room XI), 전체회의(Room VII) - 내용 : 근로감독, 노동통계 및 안전보건 관련 국제 협약 및 권고기준 재검토 - 회의자료 : ILO 홈페이지에 게시
8~9 일차	2018. 9. 22.(토) 18:05 → 9. 23.(일) 13:05	○ 제네바 출발 → 인천 도착 (파리 경유)

5. ILO 기준검토 메카니즘(SRM) 3자 실무그룹(TWG) 제4차 회의 관련내용

가. SRM TWG 제4차 회의 안전목록

A: Preparatory documents to support review of instruments	
INSTRUMENTS CONCERNING OSH (SPECIFIC BRANCHES)	
Overview document 1	Elements relevant to review of OSH instruments
Technical note 1.1	Underground Work (Women) Convention, 1935 (No. 45); Safety and Health in Mines Convention, 1995 (No. 176); Safety and Health in Mines Recommendation, 1995 (No. 183)
Technical note 1.2	Safety Provisions (Building) Convention, 1937 (No. 62);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Convention, 1988 (No. 167);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Recommendation, 1988 (No. 175)
INSTRUMENTS CONCERNING LABOUR INSPECTION	
Overview document 2	Elements relevant to review of labour inspection instruments
Technical note 2.1	Labour Inspectorates (Non-Metropolitan Territories) Convention, 1947 (No. 85)
Technical note 2.2	Labour Inspection Recommendation, 1923 (No. 20)
INSTRUMENTS CONCERNING LABOUR STATISTICS	
Overview document 3	Elements relevant to review of labour statistics instruments
Technical note 3.1	Conven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ages and Hours of Work, 1938 (No. 63); Labour Statistics Convention, 1985 (No. 160); Labour Statistics Recommendation, 1985 (No. 170)

B: Other preparatory documents to support the SRM TWG's work	
Information document 1	Internal work plan for SRM TWG's initial programme of work (2018)
Information document 2	Office report on implementation plan to follow-up 2016 and 2017 recommendations of the SRM TWG
Information document 3	SRM TWG process to review instruments
Information document 4	Synergies between SRM TWG work and other ILO initiatives
Information document 5	Possible sets of instruments for examination in 2019
Information document 6	Logistical arrangements for the next meeting

C: Options papers requested by the SRM TWG	
Options paper 1	Options for ensuring coherence and consistency in the follow-up to the SRM TWG recommendations on OSH (para. 4 of the SRM TWG's 2017 recommendations)
Options paper 2	Options for addressing the impact of SRM TWG recommendations on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of the Office and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para. 6 of the SRM TWG's 2017 recommendations)

○ 제4차 회의안전관련 정보

-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international-labour-standards-policy/WCMS_632268/lang-en/index.htm

나. SRM TWG 제4차 회의 세부진행 현황

일 자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2018. 9. 17.(월)	09:00 - 10:00	정부 지역그룹 대표자 회의	한국, 중국, 인도, 이란
	10:00 - 12:0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	한국 등 16개국
	14:30 - 15:30	전체회의	서론(Introduction)
	15:30 - 18:30		Info. document 1~6 검토
9. 18.(화)	09:00 - 10:0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1)	근로감독(Labor Inspection)
	10:00 - 13:00	전체회의(1)	
	14:30 - 15:3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2)	산업안전보건(광업)
	15:30 - 18:30	전체회의(2)	
9. 19.(수)	09:00 - 10:0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1)	산업안전보건(건설업)
	10:00 - 13:00	전체회의(1)	
	14:30 - 15:3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2)	노동통계(Labor Statistics)
	15:30 - 19:30	전체회의(2)	
9. 20.(목)	09:00 - 10:0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1)	Options paper 1
	10:00 - 13:00	전체회의(1)	
	14:30 - 15:3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2)	Options paper 2
	15:30 - 18:30	전체회의(2)	
9. 21.(금)	09:00 - 10:00	정부그룹 대표자 회의	최종검토회의
	11:00 - 13:00	전체회의(1)	
	14:30 - 16:00	전체회의(2)	최종의견취합/폐회

6. 회의참석자

○ 의장(Chairperson) : Mr Jan FARZAN

○ 정부대표(Governments' representatives) 16명

- [대변인(Spokesperson)] Luis Rodrigo L. MORALES VELEZ(멕시코)
- (한국) 권병희
- (브라질) Mr Pablo Angelo Sanges GHETTI
- (캐나다) Ms Heather CALDER
- (중국) Mr Yulin LYU
- (콜롬비아) Mr Yesid Andres SERRANO ALARCON
- (나이지리아) Mr Essah Aniefiok ETIM
- (인도) Mr Rajan VERMA
- (이란) Mr Ramin BEHZAD
- (케냐) Ms Millicent MULI
- (리투아니아) Ms Neringa DULKINAITE
- (MALI) M. Fassoun COULIBALY
- (남아프리카공화국) Mr Kgomoletso LETOABA
- (네덜란드) Ms Manon POST
- (루마니아) Mr Cristian TACHE
- (스웨덴) Mr Thomas JANSON

※ 자문관(Advisor) : 김경환(공단), Luis Calos MELERO GARCIA(스위스), Ms Evelyne PICHOT, Ms Marie Victorine MENDY, Mr Liu YUTONG(중국), Mr Mohamed BAKIR, Ms Laura SILVA, Ms Alice GONZALEZ GUTIERREZ

교체대표(Substitute) : 최재훈(고용부), Mr Suresh SINGH(인도), Mr Mehrdad FALLAHI(이란), Mr Shunghang LIU(중국), Ms Joan BARRETT(미국)

○ 사업주대표(Employers' representatives) 7명

- [부의장(Vice-Chair)] Ms Sonia REGENBOGEN (캐나다)
- (콜롬비아) Sr Alberto ECHAVARRIA SALDARRIAGA
- (캄보디아) Ms Sandra D' AMICO
- (레소토) Ms Lindiwe SEPHOMOLO
- (뉴질랜드) Mr Phil O' REILLY
- (터키) Mr Ulas YILDIZ
- (스리랑카) Mr Kanishka WEERASINGHE

○ 노동자대표(Workers' representatives) 8명

- [부의장(Vice-Chair)] Ms. C. PASSCHIER (네덜란드)
- (영국) Ms Amanda BROWN
- (벨기에) Mr Herman FONCK
- (스위스) M. Brian KOHLER
- (영국) Mr Fiona MURIE
- (영국) Mr Rory O' NEILL
- (짐바브웨) Mr Zakeyo MTIMTEMA
- (아르헨티나) Sra. Marta PUJADAS

7. 회의결과

■ 회의명 : ILO 기준 재검토 메커니즘 3자 실무그룹 제4차 회의

[The 4th Meeting of Standards Review Mechanism Tripartite Working Group (SRM TWG)]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 9. 17.(월) ~ 9. 21.(금), 제네바 ILO 본부

■ 주관기관 : 국제노동기구 (ILO)

■ 참석자

- 공식대표 : 총 31명의 노사정대표 (정부대표 16명, 노사대표 15명)
- 한국 대표단 : (정부대표) 주제네바대표부 권병희 참사관
(교체대표) 고용노동부 최재훈 사무관
(자문관) 안전보건공단 김경환 차장

■ 핵심요지

1) SRM TWG 회의 배경

- (SRM TWG 설치배경) ILO 창설 100주년 기념 7대 사업(ILO centenary initiatives) 중 하나인 기준혁신사업(The standards initiative)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ILO가 채택한 협약(Convention) 및 권고(Recommendation) 399개에 대한 최신성(up-to-date)과 타당성(relevance)을 검토하기 위해 2015. 3월에 설치하기로 결정함.
- (SRM TWG 그간의 활동내용)
 - 1차 회의 (2016.2.22.~2.25.)에서 작업범위를 결정
 - 2002년 Cartier 작업반에서 ‘유효기간만료(out of date)’ 및 ‘임시(interim)’로 분류한 협약 및 권고 231개
 - 2차 회의(2016.10.10.~10.14.)에서는 Cartier 작업반이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한 협약 및 권고 63개 문서를 검토하여,
 - 9개문서는 폐기 또는 철회, 14개의 권고는 효력이 없음을 적시토록 이사회(Governing Body)에 권고함.
 - 3차 회의(2017.9.25.~9.29.)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19개의 문서를 검토하여,
 - 노동기준 8개를 ‘최신기준(up to date)’, 9개를 ‘사후조치 필요(requiring further action)’, 그리고 1개를 ‘유효기간만료(out of date)’로 분류함.

2) SRM TWG 제4차 회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분야 6개의 협약 및 권고문서 검토

- (건설업) Safety Provisions (Building) Convention, 1937(No. 62)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Convention, 1995(No. 167)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Recommendation, 1995(No. 175)
- (광업) Underground Work (Women) Convention, 1935(No. 45)
Safety and Health in Mines Convention, 1995(No. 176)
Safety and Health in Mines Recommendation, 1995(No. 183)

○ 근로감독 및 노동통계분야 5개의 협약 및 권고문서 검토

- Labor Inspectorates (Non-Metropolitan Territories) Convention, 1974(No. 85)
- Labor Inspection Recommendation, 1923(No. 20)
- Conven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ages and Hours of Work, 1938(No. 63)
- Labor Statistics Convention, 1985(No. 160)
- Labor Statistics Recommendation, 1985(No. 170)

○ SRM TWG의 협약 및 권고 검토절차('17년 제3차회의 권고안)에 대한 논의

- (Options paper 1) ILO 기준들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고려한 기존 노동 기준의 개정방안(주제별 통합, 부분적 통합, 전체적 통합 등) 논의
- (Options paper 2) 사무국의 인적·물적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SRM TWG 권고안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선택사항 검토

3) SRM TWG 제4차 회의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 (1) 건설업 안전보건협약 및 권고안 관련하여 이사회(the Governing Body)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

구 분	제 목	분 류
협약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Convention, 1995(No. 167)	최신기준(up to date)
권고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 Recommendation, 1995(No. 175)	
협약	Safety Provisions (Building) Convention, 1937(No. 62)	유효기간만료(outdated)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에 따른 실질적이고 기한이 설정된 (practical and time-bound) **후속조치사항(follow-up action)**

① (사무국) 회원국들의 최신협약(C. 167) 비준(ratification) 촉진 및 유효기간만료 협약인 C. 62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최신협약 비준 독려

- (사무국) 전문적인 지원(technical assistance), 2022년까지 건설업 실행규약(code of practice) 개정

② 2024년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C. 62 폐기안(abrogation) 고려

③ SRM TWG 2020년 회의에서 사무국의 그간 촉진활동 검토 후 추가 조치 필요여부 논의

(2) 광업 안전보건협약 및 권고안 관련하여 이사회(the Governing Body)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

구분	제목	분류
협약	Safety and Health in Mines Convention, 1995(No. 176)	최신기준(up to date)
권고	Safety and Health in Mines Recommendation, 1995(No. 183)	
협약	Underground Work (Women) Convention, 1935(No. 45)	유효기간만료(outdated)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에 따른 실질적이고 기한이 설정된 (practical and time-bound) **후속조치사항(follow-up action)**

- ① (사무국) 회원국들이 최신협약(C. 176) 비준(ratification)이 촉진되도록 전문적인 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 캠페인 전개
- ② 2024년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C. 45 폐기안(abrogation) 고려
- ③ (사무국) 광업종사 근로자의 양성평등문제 관련하여,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연구 필요

(3) 근로감독 관련하여 이사회(the Governing Body)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

구분	제목	분류
협약	Labor Inspectorates (Non-Metropolitan Territories) Convention, 1947(No. 85)	유효기간만료 (outdated)
권고	Labor Inspection Recommendation, 1923(No. 20)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에 따른 **후속조치사항(follow-up action)**

- ① 2024년 국제노동회의(ILC)까지 C. 85 폐기 고려
 - ② (사무국) 복잡한 법적문제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C. 81 및 C. 129 비준 독려
 - ③ C. 81 및 C. 129 비준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 확인 : 2019년 SRM TWG에서 논의
 - ④ 2022년 R. 20 철회(withdrawal)를 고려하고 그 전에 C. 81 및 C. 129의 기본원칙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개발
- (4) 노동통계관련 협약 및 권고안 관련하여 이사회(the Governing Body)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

구분	제목	분류
협약	Labor Statistics Convention, 1985(No. 160)	최신기준(up to date)
권고	Labor Statistics Recommendation, 1985(No. 170)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age and Hours of Work, 1938(No. 63)	유효기간만료(outdated)

○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분류에 따른 후속조치사항(follow-up action)

① C. 160 비준(ratification) 촉진

② 2024년 C. 63 폐기 고려

③ (사무국) 후속조치 및 ICLS에게 회원국들이 C. 160을 비준하도록 요청

(5) SRM TWG의 협약 등 검토절차(review process)에 대한 고찰
(options paper 1:2)

○ ILO 기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다음 회의에서도 논의 필요

- (사무국) 향후 논의를 위해 법률적 검토내용이 포함된 추가서류 준비 필요

○ (협약권고 통합안)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노동자 재해예방 목적인 협약 및 권고안이 효과적이고 쉽게 적용될 수 있고, 새로운 협약이 쉽게 갱신되며 비준율(ratification rate)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함.

- 노동자 보호수준이 낮아져서는 안되며,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중요한 요소임.

- 노동자측은 주제별통합(thematic integration)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간주했으며, 정부 및 사업주측은 부분적 통합(partial integration)안의 요소들이 주제별통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SRM TWG 권고안의 국제노동회의 및 사무국에 미치는 영향력)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SRM TWG 권고안이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 사무국이 가진 자원 및 능력에 대한 정보와 여러 선택사항(options)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SRM TWG의 역할은 오래된 협약의 개정뿐만 아니라 노동기준의 정착 및 비준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함.

(6) SRM TWG 5차회의 준비

- 일시 : 2019. 9. 23.(월) ~ 9. 27.(금)
- 검토대상 : 9개의 협약 및 권고안
 - Employment policy instruments
 - Unemployment Convention, 1919(No. 2)
 -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No. 88)
 -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1949(No. 96)
 -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No. 181)
 - Employment(Transition from War to Peace) Recommendation, 1944 (No. 71)
 - Labor Inspection (Mining and Transport) Recommendation, 1947(No. 82)
 - Private Employment Agencies Recommendation, 1997(No. 188)
 - Job Cre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commendation, 1998(No. 189)
 -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33(No. 34)
- 자문관(advisor)은 8명까지 참석가능

4) 관찰 및 평가

- 국제노동기준의 최신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협약 및 권고안들이 혼재되어 있는 국제노동기준들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그 효력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 SRM TWG의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협약·권고안의 분류*, 회원국들의 최신기준 비준 독려 및 유효기간만료 기준 폐기절차 진행 등 주요활동을 지속해 왔음.

※ 분류기준 : up to date, outdated, requiring further action

○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분야 국제노동기준의 개정방안 및 SRM TWG의 효과적인 검토절차방안 논의 시작

- 신·구 협약 등이 혼재된 국제노동기준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통합 또는 주제별·부분별 통합(안)을 논의하기 시작함.
- 시간 및 자원이 상당히 소요되는 논의주제로, 노동자의 보호수준을 유지하고 회원국들의 비준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회의에서 추가자료 준비(사무국) 및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한국의 국제노동기준 비준 등 현실태 및 개선방향

- (비준 현황) 산업안전보건분야 협약의 경우 기준이 되는 C. 155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및 C. 187(promotional framework)의 비준은 이뤄졌으나,
- 금번 4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업·광업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언급한 협약(specific branches)의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안전기준 관할부처 및 적용범위가 나뉘져 있는 우리나라 안전관련 법체계의 현실적 특성*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예) 광산안전법은 산자부에서, 근로자 안전과 시설물 안전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

- (ILO기준과 국내법 비교) ILO 건설업 안전보건기준인 C. 167의 각 조항별 규정내용 검토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의 일부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여 보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프로젝트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사항* 고려
- * 계획·설계·시공 등 공사단계별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한 법률(안)의 입법이 현재 지연되고 있음.
- 노동자의 위급상황에 대비한 사업주의 응급조치(first aid) 의무
- 따라서, ILO 협약 재편에 참여한 16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국제노동외교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 국제노동기준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 등으로 국제노동기준 비준율(ratification rate)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SRM TWG 회의는 향후에도 매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follow-up할 수 있는 인력 및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노동기준 관련분야별 자문관(advisor) 참석을 통해 현실태 파악 및 우리 정부의 입장 적극 대변 필요

10. 불임(첨부)자료

<불임 1> SRM TWG 4차회의 회의록

<별첨> SRM TWG 이사회 제출보고서, 기술노트(Technical note) 등 17개 문서

1일차 [2018. 9. 17.(월)]

[(오전) 정부그룹회의]

- 전체회의 논의안건 제안
 - 정부측의 적극적 회의참석 및 의사표명 필요
 - 사업주-노동자 측의 합의안을 수용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공식회의 참석을 통해 정부측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필요
- SRM TWG 4차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안건에 대한 토의
 - 전체적이고 객관적 접근 필요

[(오후) 전체회의] 의장 진행 및 사무국 보조하에 사업주·노동자·정부측 대표자 참석
 ※ 정부측 분야별 조연자(advisor) 배석

- SRM TWG 4차 회의 개요 설명
 - 근로감독 및 노동통계
 - (산업안전보건) 건설업, 광업
 - ILO 협약 및 권고안에 대한 SRM TWG 검토절차 논의(options paper 1:2)
 - 최종검토 및 보고서 채택
 - 그간 사무국(Office)의 노력·성과 설명 : 그간의 활동에 대한 정리 및 회의자료 작성, 미비준 회원국에 대한 비준 독려 및 지원
- 정보문서(6개) 설명 및 토론
 - (정보문서1) 세차례에 걸쳐 개최된 SRM TWG 회의를 통해 검토된 235개 협약 및 권고문서(instruments) 분류 : 검토완료, 실질적 검토 시작, 미검토
 - (정보문서2) 협약문서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 보고
 - (정보문서3) 협약문서 검토절차 논의
 - 세가지 분류방법 : 최신안전(up to date), 유효기간만료(outdated), 추가조치필요 (requiring further action to ensure continued and future relevance)
 - (정보문서4) SRM TWG 역할과 ILO의 다른 결의안(initiative) 간의 시너지효과
 - (정보문서5) 2019년 회의에서 논의할 협약문서 검토
 - (정보문서6) STM TWG 5차 회의 준비

2일차 [2018. 9. 18.(화)]

[(오전) 정부그룹회의]

- ☐ (C-85) 식민지(Non Metropolitan Territories) 지역 근로감독(Labor inspection) 협약에 대한 입장
 - (분류) 유효기간만료(outdated) → 최신 협약인 C-81과 규칙 적용상의 차이(gap) 없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C-85의 폐기(abrogation)를 주장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체회의에서 이견(폐기연기)을 제시코자 함.
- ☐ (R-20) 근로감독 권고안에 대한 입장
 - (분류) 유효기간만료(outdated)
 - 최신 협약인 C-81 및 농업분야 최신 협약인 C-129과 규칙 적용상의 차이(gap)가 존재하므로, 폐기(abrogation)를 연기하고 최신협약 기준을 독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 (C-45) 여성의 광산 지하작업 관련 협약에 대한 입장
 - (분류) 유효기간만료(outdated)
 - 68개국이 비준하였고 그 중 30개국이 해당협약을 폐기하였으므로, 폐기결정 시 C-45에 의해 제약을 받는 아프리카 중심 38개국에서 규칙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금 바로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 ☐ (C-167, 183) 광업 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에 대한 협약 입장
 - (분류) 최신협약(up to date)

[(오전) 전체회의]

(1) 근로감독관련 협약(C-85, C-81 및 C-129)

- ☐ (사무국) 근로감독관련 협약인 C-85, C-81 및 C-129에 대한 개요 설명
 - C-85는 식민지 지역(NMT)에 대한 근로감독 협약으로 ILO의 보편성(universality) 원칙에 맞지 아니하여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 필요
- ☐ (사업주측) C-85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
 - C-81 및 C-129과는 규칙적용상의 차이(gap) 없음

- (C-85 폐기관련) 식민지의 ILO 협약 적용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으며, C-81의 비준 촉진과 동시에 C-85의 폐기가 진행되어야 함.
- (정부측) C-85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
 - (C-85 폐기관련) 기본적으로 폐기(abrogation)에 동의하나 C-81 미비준 국가의 의견청취(feedback) 필요
 - C-85 비준 국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technical assistance) 필요 : 식민지 지역에서 C-85 폐기 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 등
- (노동자측) C-85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
 - 11개국에서 C-81을 비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C-85 폐기에 따른 규칙적용상의 차이(gap)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설정 및 전문적인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포괄적이고 보완된 협약인 C-81 비준 유도
- (마무리) 의장은 C-85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하고, C-81 비준 독려 및 C-85의 조속한 폐기를 위한 후속조치를 실행한다는 내용에까지 의견이 일치됨을 확인함.

(2) 근로감독체계의 일반적인 원칙 (R-20)

- (사무국) 근로감독체계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권고안인 R-20에 대한 개요 설명
 - C-81 및 C-129와 비교 시 규칙적용상의 차이(gap)가 존재하며, C-81 및 C-129의 내용이 보다 세부적이므로, 그 간극을 매우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사업주측) R-20을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
 - (R-20 폐기관련) C-81 및 C-129의 비준이 가능할 때 까지 가이드라인 보급 및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필요
- (노동자측) R-20은 근로감독 관련 현대적 접근법과 일치하므로, 폐기를 결정하기 어려움
 - (분류) 부분적인 개정을 제안함 → 추가조치필요(requiring further action)
- (정부측) R-20을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하고, C-81 및 C-129와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 기한설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마무리) 의장은 R-20이 현재 상황에서 적용상의 타당성(relevance)이 있으므로 고려할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논의하고자 함.

[(오후) 전체회의]

- (사무국) 광업 안전보건관련 협약인 C-45, C-176 및 R-183에 대한 개요 설명
 - C-45는 광업 종사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이 광산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으로 양성평등 및 성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분류 필요
 - 광업 안전보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C-176을 최신협약(up to date)으로 분류 필요
- (노동자측) C-45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76을 최신협약(up to date)으로 분류
 - C-45는 임시협약으로 여전히 38개국이 해당협약을 지키고 있으며, C-176이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광산에서의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전문적인 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 C-176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계획 필요
 - 광업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
- (사업주측) C-45를 유효기간만료로, C-176을 최신협약으로 분류
 - (C-45 폐기관련) C-45는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나므로 폐기하는 것이 맞음
 - 하지만, C-176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폐기연장이 필요하며, 2021년 ILC 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정부측) C-45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76을 최신협약으로 분류
 - (C-45 폐기관련) 아프리카 등 38개국이 C-45협약을 지키고 있으므로 C-176을 비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함.
 - 최신협약인 C-176의 비준이 적은 이유에 대한 분석 필요
- (마무리) 의장은 C-45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76을 최신협약으로 분류하고, 두 협약 사이에 규칙적용상의 실제적인 차이(gap)가 존재하므로, 타임프레임 설정 및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C-176의 비준을 촉진하자는 데는 노사정 모두가 동의한다고 판단함.
 - (미합의 사항) 그러나, 양성평등 관련하여 노동자 측에서는 C-45폐기에 따른 광업 종사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및 정부 측에서는 C-45는 양성평등 및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바로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함.

[(오전) 정부그룹회의]

- 사무국장이 Options paper 1의 내용에 대해 설명
 - ILO 기준(standard)의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련 ILO기준들의 일관성 및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들의 통합방안 및 검토절차 등에 대해 설명
 - 기존 협약들에 대한 통합·발전방향 3가지
 - ① 기존 협약들의 주제별 통합(thematic integration)
 - ② 기존 협약들의 부분적 통합(partial integration)
 - 기본틀(framwork)인 C-155 및 C-187을 기준으로 하부 그룹핑
 - ③ 전체적인 통합(consolidation integration) : MLC(Maritime Labor Convention)을 모델로 한 통합안
 - 의무사항인 Core part와 선택사항인 Optional part로 나눔

[(오전) 전체회의]

(1) 건설안전보건 협약(C-62, C-167 및 R-175)

- (노동자측) C-62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67를 최신협약(up to date)으로 분류
 - 세계건설시장의 규모, 작업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지속적인 사망사고의 발생을 고려할 때 C-167은 매우 유용한 협약임. → C-167 비준 확대를 위한 캠페인 등 노력 필요
 - (C-62 폐기관련) C-62의 성급한 폐기는 해당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건설안전 규칙적용상의 공백을 발생시킴 → C-167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과도기적 계획(transition plan)이 필요.
- (사업주측) C-62를 유효기간만료로, C-167를 최신협약으로 분류
 - 하지만 C-167의 세분화된 조항들은 비준의 장애물이며, 현대적 접근법에도 일치하지 않음.
 - 또한, 포괄적 협약인 C-155 및 C-187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C-167의 비준 독려에는 초기에 반대하였으나,

- (C-62 폐기관련) 기한을 설정한 C-62 폐기 및 C-167 비준 독려를 촉진하는 것에 동의함
- C-167비준과 동시에 C-62를 폐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prioritizing)에는 반대함.

□ (정부측) C-62를 유효기간만료로, C-167를 최신협약으로 분류

- 두 협약사이에 규칙적용상의 차이(gap)는 없음
- C-167비준과 동시에 C-62를 폐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prioritizing)에는 반대함.
- (C-62 폐기관련) 기한을 설정한 C-62 폐기 필요

□ (마무리) 의장은 C-62를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67을 최신협약(up to date)으로 분류하고, 두 협약사이에 규칙적용상의 차이(gap)는 없다는 내용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 (미합의) C-62폐기 관련 기한을 정하고(2024년까지) 폐기하자는 주장과 C-62의 성급한 폐기에는 반대하고 C-167 비준을 촉진할 수 있는 과도적적 계획수립(transition plan) 및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오후) 전체회의]

(1) 노동통계 관련 세가지 협약 및 권고안에 대한 토론 진행

: (C-63) 노동임금 및 시간의 통계관련 협약, (C-160) 노동통계 협약, (R-170) 노동통계 권고안

□ (사업주측) C-63을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60을 최신협약으로 분류

- 두 협약 간 규칙적용상의 차이(gap)는 없음.
- (C-160) 전문용어(terminology)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C-160 비준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 필요
- (C-63 폐기관련) C-160의 비준과 동시에 C-63폐기하는 안을 지지하며, C-63 폐기 연기에는 동의하지 않음
 - C-160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조치 필요

□ (노동자측) C-63을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60을 최신협약으로 분류

- 두 협약 간 규칙적용상의 차이(gap)는 없음.
- (C-63 폐기관련) C-160 비준을 촉진하는 조치가 중요하며, 기한을 정한 C-63 폐기

진행을 주장 → 기한 설정은 이사회(governing body)가 결정

- (정부측) C-63을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60을 최신협약으로 분류
 - 두 협약 간 규칙적용상의 차이(gap)가 없다는 주장과 적용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 (C-63 폐기관련) C-63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한을 정하여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견에 대한 추가논의 후 2021년까지 기한을 정해 C-63폐기를 진행하는 안을 제시함.
- (마무리) 의장은 C-63을 유효기간만료(outdated)로, C-160을 최신협약으로 분류하고 두 협약 간에 규칙적용상의 차이(gap)는 없다는 내용과, C-160 비준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 (미합의 사항) C-63 폐기관련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4일차 [2018. 9. 20.(목)]

[(오전) 전체회의] Options paper 1

- SRM TWG는 해당 내용이 ILO 기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용이 광범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3자토론 등 다음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사무국) 향후 논의를 위해 법률적 검토내용이 포함된 추가서류 준비 필요함.
- 협약권고 통합안 관련하여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노동자 재해예방 목적인 협약 및 권고안이 효과적이고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협약의 용이한 갱신 및 비준율 (ratification rate)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함.
- 노동자측은 주제별 통합안(thematic integration)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국제노동기준의 개선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수준이 결코 낮아져서는 아니되며,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함.
 - 그리고 전체적 통합안(consolidation)은 SRM TWG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약화시킬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함.
- 정부측은 이번토의는 장기적인 토론의 시작이며 ILO 기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으며,
 - 부분적 통합(partial integration)안의 일부 요소들이 주제별 통합(thematic integration)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사업주측은 최신 협약들의 비준 및 실행율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 전체적인 통합안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부분적 통합안의 요소들이 주제별 통합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오후) 전체회의] Options paper 2

- SRM TWG 권고안이 보다 체계적이 효과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문제는 중요한 논제이며 시간과 정보가 많이 필요함.
- 사무국이 가진 자원 및 능력에 대한 정보와 여러 선택사항(options)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SRM TWG의 역할은 오래된 협약의 개정뿐만 아니라 노동기준의 정착 및 비준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함.

- 이러한 문맥에서 최신협약 비준의 촉진 및 협약·권고안의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사·정 3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함.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및 노동통계 관련 협약 및 권고안에 대한 미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 진행함.

5일차 [2018. 9. 21.(금)]

- 지금까지의 논의사항 정리 및 SRM TWG의 이사회(Governing Body) 권고안 주요 내용 채택
 - 사무국에서 정리한 보고서(초안)을 토대로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노·사·정 3자 의견 조율 및 보고서 내용 결정
- 미합의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주요내용
 - (근로감독) 2024년 국제노동회의(ILC)까지 C-85 폐기를 고려
2022년 R-20 철회(withdrawal)를 고려하고 그 전에 C-81 및 C-129의 기본원칙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개발
 - (광업 안전보건) 2024년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C- 45 폐기안(abrogation) 고려, 광업종사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연구 진행
 - (건설업 안전보건) 2022년까지 건설업 실행규약(code of practice) 개정, 2024년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C-62 폐기안(abrogation) 고려, SRM TWG 2020년 회의에서 사무국의 그간 촉진활동 검토 후 추가조치 필요여부 논의
 - (노동통계) 2024년 C-63 폐기 고려, ICLS에게 회원국들이 C-160을 비준하도록 요청